

제 1536 호
1991. 1. 1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
편집인: 공보관 유천수
전화: 731-6111~3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: 735-3337

시 보

차 레

◎ 조 레		
제2701호	서울특별시 인구억제 대책 추진 협의회 설치 조례 증개정조례	3
제2702호	서울특별시 시립 병원 수가 조례 증개정조례	3
제2703호	서울특별시 시립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4
◎ 규 칙		
제2368호	서울특별시 시립 병원 수가 조례 시행 규칙 증개정 규칙	5
◎ 고 시		
제 3 호	사료성분 등록고시	6
제 5 호	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 고시	6

(이면계속)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공 고

제 2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설立	8
제 7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입법예고	8

◎ 구 고 시

제 1 호 도시계획사업(연구시설)시행허가변경(기간연기) (서초)	9
제 1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시행허가 (노원)	9
제 2 호 도시계획사업(도로)설시계획인가 (노원)	10
제 3 호 도시계획사업(종합의료시설)변경시행허가 (노원)	11

◎ 구 공 고

제 1 호 주택자재생산업소영업정지해제 (강서)	11
제 1 호 도시계획사업(학교)변경완료공고 (구로)	11
제 1 호 축적변경시행공고 (중구)	12
제 2 호 주택건설사업자동록발소 (강서)	12
제 3 호 도시계획시설(지하도로)설정공람공고 (종로)	13
제 4 호 주택건설사업자및대지조성사업영업정지 (동대문)	13
제 27 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지정 (도봉)	13

◎ 사 령

◎ 정 정 공 고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인구 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1. 1. 7

서울특별시장 박세직 ①

◎서울특별시조례제2701호

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 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(교육위원회) 교육감 및 부시장이 된다.

③위원은 인구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인구대책과 관련되는 유관 기관장등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및 소속

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.

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, 보건사회국장이 되며, 위원은 유관기관 실무급 인사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

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.

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간사는 인구대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부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1. 1. 11

서울특별시장 박세직 ①

◎서울특별시조례제2702호

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입원환자의 급식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의료보호진료 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한다.

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서울특별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중 무료환자외의 자는 서울특별시이 거주하는 자로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2인(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및 2종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필요없으며,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)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서약서를, 무료환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

<p>입원서 약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서울특별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자 중 무료환자의 자는 수가예상액의 30% 이상의 범위안에서 병원장이 정하는 일원보증금을 예납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료보호법에 의한 1종 및 2종 의료보호대상자나 외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원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 제3항중 "전항의"를 "제2항의"로 한다.</p>	<p>1. 성동종합체육시설</p> <p>2. 울림파기념국민생활관</p> <p>3. 구민체육센터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센터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3조(체육센터의 운영위탁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·운영(이하 "운영"이라 한다)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지원)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사용료등) ①시장(수탁자를 포함한다)은 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체육센터의 사용료등은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</p> <p>②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</p>
---	---

1991. 1. 11
서울특별시장 박세직 ①

◎서울특별시조례제2703호

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이식의 함양을 위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(이하 "체육센터"라 한다)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체육센터의 설치등) ①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체육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<p>및 대여받은 국·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④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감독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위탁의 철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.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.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제9조(권한의 내용) 이 조례중 성동종합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이를 성동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다만,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운동장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<별표2> 개인연습사용료증 "성동종합체육시설"란을 삭제하고, 동표 비고란중 "토·일·공휴일은 평일의 3할(골프장은 5할)을 가산함. (다만, 플프연습장 및 카드사용료는 제외한다)"를 "토·일·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"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성동종합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성동종합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고시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 칙</p> <p>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증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1. 1. 11 서울특별시장 박세직인</p> <p>◎서울특별시규칙제2368호</p> <p>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</p> <p>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
---	---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제5조(수가) 입원환자에 대한 수가는 주별로 납부하도록 하되, 매주 월요일에 그 전주분을 징수한다. 다만, 입원 환자가 납기전에 퇴원할 경우에는 퇴원할 때 징수한다.

부
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3호

사료성분등록

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1. 1. 4

서울특별시장

사료성분등록대역

제조업체	소재지	대표자	등록번호	사료종류	사료명칭	사료용도	사료성분량					
							조밀액질	조자방	칼슘	인	조섬유	조회분
건국사료 (주)	서울 성동구 자양동 227-315		나01-31	단백합	산란초기	유색계용: 산란개사-40주	16.0%	2.0%	2.5%	0.4%	8.0%	15.0%
			나01-32	기타가축 용배합사 료	육성폐추리	육성용	19.5	2.0	0.6	0.4	8.0	9.0
			나01-33	"	산란초기 폐추리	산란용	18.0	2.0	2.5	0.4	8.0	15.0
(주)미원	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29-6	김재방	나01-34	"	사슴사료	사육 전기간 용	14.0	2.0	0.6	0.4	25.0	12.0

◎서울특별시고시제5호

농수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

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을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1. 1. 9

서울특별시장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1.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, 기간

지역	품목	기간
서울특별시전지역	○파실류(2종) 바나나, 파인애플	'91. 1. 10 - 12. 31

제1536호 시

보 1991. 1.10 16-7

2. 거래제한 사유 농수산물 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	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확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3. 거래제한 내용 고시품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함.	- 포장상품 : 거래확인서 발급 및 거래표시(스탬프식)
4. 거래 품목 표시 지정도매인과 농수산물공판장은 상장품목	- 비포장상품 : 거래확인서 발급
	5. 벌 칙 위의 고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○ 거래확인서 양식

No. 91-0000

거 래 확 인 서

거래품명 :	수량 :	규격 :
판매회사명 : ○ ○ 청과 (주)		
증매인번호 :	상호 :	성명 :
매수자		
영업장소 :	상호 :	성명 :

거래일시 91.

확인자 : 도매회사 ①

* 3부작성 (법인, 증매인, 매수자용) 규격 : 100mm × 160mm
 * No (일련번호) : 상장법인별 년도와 발급 일련번호 기재

○ 거래확인 표시인 (스탬프식)

- 표시부위 : 포장상자 측면
- 색상 : 청색
- 규격 및 모형



규격 : 직경 700mm

16-8

제1536호 시

보 1991. 1.10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2호

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 실효
전기공사업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전기공

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실효 처분하였기
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1991. 1. 9

서울특별시장

- 다 음 -

면허 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사유
177	대기토건(주)	종로구 운니동98-78	이용주	자진반납(폐지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7호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
개정조례(안)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1. 1. 10

서울특별시장

청소년 : 1,600원 → 2,000원

어린이 : 800원 → 1,000원

나. 어린이요금 정수대상 연령과 공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시직영 관리공원과 민자공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직영 관리공원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민자공원시설은 다음과 같이 조정함
○ 어린이 : - 시직영 관리공원 - 만7세이상

- 민자공원 시설 - 만4세이상

○ 입장료 : - 시직영 관리공원 - 만65세 이
상 무료

- 민자시설공원 - 만65세이상
어린이요금 적용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. 1. 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쪽지 세워서 작성)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공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
주소

1. 개정배경

시민의 건강,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자유치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요금체계를 개정,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서울대공원 놀이동산(서울랜드) 입장

요금 변경

어른 : 2,500원 → 3,000원,

구 고 시

◎서초구고시제1호

도시계획사업(연구시설) 시행허가
변경(기간연기)

1. 강남구 고시 제122호('87. 7. 18)로 도시 계획사업(연구시설) 시행허가된 관내 우면동 17번지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

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1. 1. 7

서초구청장

- 다 음 -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초구 우면동 17번지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연구시설)

다. 사업의 규모

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건축연면적(㎡)	용	도	비	고
67,140	10,889.13	49,638.06	기계설, 전기설 연구시설	지상 1~5	주차장 13,444.65	36,193.41 지하 1층

라. 사업시행자

: 서울특별시 세종로 100번지

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우재

마. 사업기간

- 당초 : 1987. 7 ~ 1990. 12. 30

- 변경 : 1987. 7 ~ 1991. 6. 30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자목,

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형태 : 생략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생략

1. 노원구공고 제322호('90. 12. 13)로 도시 계획사업(도로) 변경시행허가 공람공고한 상계동 대로2류 26번(방학로연결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1. 1. 5

노원구청장

◎노원구고시제1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시행허가

가. 사업 개요					
사업시행지	사업의 종류 및 명칭	사업규모	착 공	준 공	비 고 (변경사유)
노원구 상계동	도시계획사업 서울 상계 창동백지개발사업주변 도로건설공사 (대로 2터 26번)	B=30m L=490m	인가일	'91. 6	· 각각전체부분 사업 시행에 포함 · 상계국교 진입로 일부포함

◎ 노원구고시제2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노원구 공고 제319('90. 12. 10)호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'공
통2동 234-3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
계획법 제25조,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

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
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련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, 건설관리과
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게 보입니다.

1991. 1

노원구청장

- 다 음 -

사업시행지	사업의 종류 및 명칭	사업 규모	사업시행기간
노원구 공통2동	공통2동 234-3 도로개설공사	B=6m L=62m	인가일로부터 '91. 12. 30

가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나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지번, 지목 및
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— 별첨

다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
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—별첨

토지조서

동명	지번	지목	면적	소유자(토지대장상) 주소, 성명
공통2동	234-3	대	322坪	서울 종로구 계동 140-2 (현대건설(주))
	234-5	대	7坪	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4번지 효성중공업(주)

◎노원구고시제3호

도시계획사업(종합의료시설)변경시행허가

1. 노원구 고시 제3호('88. 1. 15)로 도시계획사업(종합의료시설)시행허가된 노원구 상계동 210일대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1. 1. 9

노원구청장

- 아 래 -

가. 사업시행지 : 노원구 상계동 210일대
(상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)

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
(종합의료시설)

다. 사업시행자 : 중구 저동2가 85,
학교법인 인체학원 이사장 백낙조

라. 변경내용 : 건축면적(연면적) 증축

- 당초 : 34,277.24㎡

- 변경 : 36,541.88㎡

*지상층면적 2,264.64㎡

사업기간연장

- 당초 : '90. 12. 31

- 변경 : '91. 12. 31

구 공 고

◎강서구공고제1호

주택자재 생산업소 영업정지 해제

다음주택자재 생산업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3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주택자재 생산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해제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1991. 1. 3

강서구청장

- 다 음 -

등록번호	상 호	대 표 자	소 재 지	등록품목	영업정지 기간	해제일자
14-7	대성산업	윤 임 순	화곡동 888-5	시멘트풀목	'90. 12. 1- '91. '90. 12. 30 1. 3	

◎구로구공고제1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변경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7호('77. 2. 18)로 시행허가하고, 구로구 고시 제54호('88. 7. 30)로 변경시행 허가된 다음 도시계획사업(학교)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5조

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업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1. 1

구로구청장

16-12

제1536호 시

보 1991. 1.10

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 고척동 62-160 번지	다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구로구 고척동 62-10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 지용업		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	라. 사업시행규모 : 대지면적 34,974.05㎡		
마. 변경내용			
구 분	변 경 전 (㎡)	변 경 후 (㎡)	비 고
건축 면적	5,152.17	5,152.17	
건축 연면적	27,205.5	27,983.1	증 777.6 ㎡
바. 시행기간 : '88. 8. 30~'90. 12. 31			
◎중구공고제1호			
축적변경 시행공고			
<p>황학지구 축적변경 사업에 대하여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관계도서를 중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0. 1 중구청장 ⑤</p>			
<p>1. 시행목적 : 지적축량의 정확성 재고와 지적 불투합지 해소</p> <p>2. 사업시행지의 지역 : 황학동 1228번지의 180필지 (15,100㎡)</p> <p>3. 사업시행기간 : '90. 12. 28부터 '91. 12. 31까지</p> <p>4. 축적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: (구청에 비치)</p> <p>5. 축적변경 시행결과에 따른 면적 증감의 청산에 관한 사항 : 가격평가후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금전청산(관계세부사항 중구지적과 비치)</p>			
<p>6. 협조사항 : 경계표시</p> <p>가. 축적변경 시행기간중에는 시행지역내의 저작정리 및 경계복원 축량은 축적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합니다. 다만, 축적변경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나.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유부분의 특전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시행공고일 현재의 소유한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</p>			
◎강서구공고제2호			
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			
<p>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등록 말소처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1. 1. 4 강서구청장</p>			

- 다 음 -

1.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

등록 번호	상호	대표자	소재지	말소사유	등록 말소 일자
구등록 87-181	상기주택건설	이상기	강서구화곡동	자진반납	91. 1. 4
신등록 87-14-2	(개인)			342-54	

◎ 종로구 공고 제3호

도시계획시설(지하도로) 결정 공람 공고

1.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.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람기간 : 1991. 1. 11 ~ 1991. 1. 25

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정비과

1991. 1. 11

종로구청장

- 아 래 -

○ 도시계획시설(지하도로) 결정 조사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규모 (m)	비 고
신 설	지하도로	종로구 종로2가 1-1 일대	1,651	공평 제19지구 도시재개발사업 지하도로

◎ 동대문구 공고 제4호

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 영업점지

호에 의하여 영업정지되었던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1991. 1.

동대문구청장

다음 사업자는 건설업법 제50조제2항제2

영업점지 명단 (내역)

등록번호	상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영업정지기간	위반사項	적용법규
90-50-9	배양개발	김시훈	동대문구	3 월	건설공사도급한도액을	건설법
	주식회사		신설동	90. 12. 18 ~ 91. 3. 17	초과하여 건설공사를	제50조제2항 제2
					도급받음	항 제2

◎ 도봉구 고시 제27호

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지정

1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.

1. 지정구역 : 도봉구 방학동 531호 62평

2. 대지면적 : 32,320.86㎡

3. 아파트명 : 방학동 신동아아파트(2단지)

4. 규 모 : 아파트 15층 9동 총 660세대 중 420세대

1991. 1. 5 5. 사업주체 : 신동아건설(주)
도봉구청장 대표이사 유상근

16-14 제1536호 시

보 1991. 1.10

사 령

◎1990년 12월 27일자

인사발령 통지

령 제 2 호

서울특별시장에 임함.

박 세 직

90. 12. 27

서울특별시장

고 건

연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90. 12. 27

대 통령

령 제 3 호

◎1991년 1월 8일자

공무원 징계처분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이 병 태	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"견책"에 처함.	비상계획과	지방건축기사보
배 석 동	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"견책"에 처함.	동부건설사업소	지방토목기원
강 성 문	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"견책"에 처함.	상수도사업본부 영동포수도사업소	지방수도토목기원
김 녹 봉	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3호에 의거 "감봉1월"에 처함.	중랑하수처리장	기방기계장 (기능직7등급)

◎1991년 1월 10일자

9급 기술직 공무원 전출

령 제 4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 요 철	경기도 전출을 명함.	구로구	지방토목기원보

◎1991년 1월 8일자

8급이하 공무원 징계

령 제 5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조 수 남	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.2호에 의 거 "견책"에 처함.	영동포수도(사)	지방기업행정 서기보
박 종 해	불문 (경고)	동부수도(사)	지방기업행정서기

◎1990년 12월 31일자

인사발령 통지

령 제 6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김 학 재

지방토목기정

시설기정에 임함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근무를 명함.

90. 12. 31

대 통령

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를 명함.

90. 12. 31

서 울 특 별 시 장

제1536호 시

보 1991. 1.10 16-15

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의약과

지방의무기정

황 해 통

의무기정에 의함.

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의약과장에 보함.

90. 12. 31

대 통 린

① 1991년 1월 10일자

기능직 공무원 전보

령 제 7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인순렬	총무과(시장실)	중랑구	기방사무보조원 (기능직 10등급)

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취소

령 제 8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권순문	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결정(소청90-124, 90.12.27)에 따라 90.9.3자 전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	주택개량과	지방건축기사

기능직공무원 파견

령 제 9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지희	세질서 새생활실천 상황설파견(91.1.10- 별도지시시 까지)	종로구	지방사무보조원 (타자·10등급)

7급 공무원 전보

령 제 10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배현숙	총무과	강남구	지방행정주사보

② 1990년 12월 31일자

9급 공무원 의원연직

령 제 450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윤성필	원예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시민생활과	지방전산처리원보 사보

2517

16-16

제1536호 시

보 1991. 1.10.

여 행 자			여 행 국	여행기간	여행경비	여 행 목 적
소 속	직 명	성 명				
치수과 기사	지방토목 기사	이준해	일 본	91.1.14 -2.2 (20일간)	초청자부담	한강수계 중소하천 환경정비 계획에 따 른 기술연수
보건환경 연구원	기방보건 연구사	엄석원	교 토	91.1.22 -1.31 (10일간)	초청자부담	환경분석 장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 수

정 정 공 고

1. 시보 제1533호(90.12.26)에 게재된 "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한 지침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420호 '90.12.26)" 내용이 일부 잘못 게재되어 공고합니다.

구 분	오	정	비 고
충전사업(용 기충전소)허 가기준 11호	11. 기준허가 업소 의	11. 기준허가 업소 의	58-6면 12행
행정처분기준	○수요자시설에 대한 위해 예 방 계도	○수요자시설에	58-7면 22행